#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33

발의연월일: 2025. 1. 20.

발 의 자:정춘생·서왕진·황운하

김준형 • 백선희 • 박은정

김재원 · 김선민 · 차규근

신장식 · 이해민 · 강경숙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등의 경호와 관련하여 경호대상이 구금되는 상황 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현재 대통령이 내란혐의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법을 근거로 구치소에서도 경호를 계속하고 있음. 내란범죄의 혐의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특권이자 '황제 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에 맞춘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 법률 제 호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호대상이 구금되는 경우 그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금기간 중 경호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구금상태에 있는 사람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	제4조(경호대상) ①
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u>&lt;단서</u>	<u>다만,</u>
<u>신설&gt;</u>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경호대상이 구금되는
	경우 그 기간에는 경호대상에
	서 제외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